

〈논문〉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제정의 역사적 의의 -

韓寅燮\*

### 요약

이 글은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역사적·법적 의의를 다룬다. 이 임시헌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발점을 이루는 헌법문서이다. 임시헌장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 불변의 헌법 제1조가 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제는 이민족지배와 전제왕권시대의 종언을 선언한 것이며, 이는 3·1혁명이라는 혁명적 전환의 산물이었다. 3·1혁명으로 새로운 헌법제정권자로서 국민이 출현했고, 임시헌장은 이 점을 법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임시헌장의 작성자는 조소앙이며, 그 짧은 조항 가운데는 매우 선진적이고 독창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여성의 인권옹호, 모든 분야의 차별철폐, 균등한 권리와 의무의 향유, 보통선거제와 같은 균등한 참정권, 사형 및 태형의 폐지 등이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민주공화제는 인권과 균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통해 만개된다. 그러나 임시헌장의 창조적이고 선진적인 부분은 그가 외교활동을 위해 장기부재한 가운데 만들어진 <임시헌법(1919.9.11)>에서 상당부분 삭제당하지만,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역대 임정헌법 및 제헌헌법에도 그 바탕은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임시정부, 임시헌장, 임시헌법,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3·1혁명, 조소앙, 사형, 태형, 삼균주의, 신익희, 제헌헌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 大韓民國 臨時憲章

第一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

第二條 大韓民國은 臨時政府가 臨時議政院의 결의에 依하여 此를 통치함

第三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남녀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無하고 一切 平等임

第四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信教 言論 著作 出版 結社 集會 信書 住所 移轉 身體 及 所有의 自由를 享有함

第五條 大韓民國의 人民으로 公民資格이 有한 者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有함

第六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教育 納稅 及 兵役의 義務가 有함

第七條 大韓民國은 神의 意思에 依하여 建國한 精神을 世界에 발휘하며 進 하여 人類의 文化 及 和平에 공헌하기 위하여 國際聯盟에 가입함

第八條 大韓民國은 舊皇室을 우대함

第九條 生命刑 身體刑 及 公娼制를 全廢함

第十條 臨時政府는 國토회복後 滿一箇年內에 國會를 소집함

大韓民國 元年 四月 日

## I. 머리말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再建함에 있어서 ...

이 제헌헌법에 따라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헌법 前文은 “대한민국”은 “대한국민”들이 “기미 3·1운동으로 건립”했음을 역사적 사실로 명시하고, 1948년의 대한민국은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

였음을 분명히 한다. 1948년의 대한민국은 “건국”이 아니라, “재건”임을 확인한 것이다.<sup>1)</sup> 제헌회의의 이승만 의장은 헌법의 벽두에 前文을 넣을 것을 주창하였는데, 그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 기미년 3·1혁명에 쫓겨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이라는 문구를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3·1혁명의 사실을 발포하여 역사상에 남기도록 하면 민주주의라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싸워가지고 진력해오던 것이라” 하는 점을 후세에 이르도록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에서였다.<sup>2)</sup> 여기서 대한민국의 탄생을 우리의 독립운동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려는 주체적 인식이 뚜렷하다.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한민족은 망국민으로 지내야 했다. 초기에는 대한제국의 회복을 염원하는 북벽주의적 흐름도 없지 않았지만, 1910년대 후반에 이르면 새로운 형태의 나라, 즉 주권재민의 신국가 건설이라는 공화주의운동이 압도적 대세를 점하게 되었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염원은 1919년 초에 이르러 구체적 주장과 선언들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 무대도 중국의 간도와 상해, 일본의 동경, 러시아의 노령, 미국, 그리고 경성으로 펼쳐졌다. 국내외적으로 으뜸의 영향력을 가졌고 거듭 인용되었던 기미독립선언서는 그 첫 머리에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있다.

독립운동가들의 국가건설 구상의 구체적 실현은 3·1운동 직후 중국의 상해에서 집결한 애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초기 상해 임정의 수립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신한청년당과 동제사의 주도로 3·1운동 직후 국내·노령·간도 등지의 주요 인사들이 상해로 속속 모여들었다. 이들은 프랑스 조계 내에 임시독립사무소를 정하고 임시정부 건설에 주력했다. 그러던 차 서울로부터 신한민국정부(“한성정부”)의 각원 명단과 임시정부 헌법원문이 함께 도착했다. 이들은 4월 11일 상해에서 임시의정원을 개최하여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고,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sup>3)</sup>

1919년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라는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948년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확고한 법통성의 출발점으로 인정되었다. 심지어 다수의 초

1)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관점과 ‘재건’으로 보는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소위 건국론을 비판하는 논거를 잘 정리한 것으로 한시준, “대한민국 ‘건국 60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제7집(백범학술원, 2009), 321쪽 이하 참조.

2) 국회도서관, **헌법제정회의록(제헌의회)**, 1967, 341쪽.

3)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35쪽 참조.

기공문들은 대한민국의 연호로 단기(檀紀) 혹은 ‘민국 30년’ 등으로 기록하였다.<sup>4)</sup> 그러나 1962년부터 1987년까지의 헌법은 이 점에 대해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이라고만 하여, 제헌헌법 전문에서의 “대한민국 건립”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립”을 빼버리고 나면, 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사건들 중 유독 3·1운동만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즉 역사적·헌법적 문제의식의 가닥을 놓쳐버린 것이다. 우여곡절을 거쳐 1987년 헌법의 전문에는 더욱 명료하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하였다. 1919년의 대한민국 건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군사정권이 만든 헌법 전문에서 잠수했다가, 1987년 헌법에서 뚜렷히 명문화되어, 이후 지금까지 헌법적 역사성 및 법통성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첫 헌법문서는 1919년 4월 11일 확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하 “임시헌장”이라 한다)이다. 매우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임시헌장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국가, 새로운 정치체제로 들어가는 의미로 충분하다. 그 내용에 있어 또한 매우 선진적이고 독창적인 것을 담고 있다. 필자는 이 임시헌장이 우리의 헌정사에서 갖는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미 여러 연구들이 임시헌장의 제정과정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짚고 있으므로, 필자는 임시헌장 제1조에 특히 주목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살려내고, 대한민국 건립의 기초가 된 역사적 사건인 소위 3·1운동의 역사적·법적 위상을 다시 매겨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임시헌장의 독창성과 선진성의 면모를 초안작성자인 조소앙과 관련하여, 그리고 1919년 9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밝혀내고자 한다.

## II. 임시헌장의 초안 작성경위와 초안작성자

임시헌장은 3·1운동 직후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상해에 모여들어 곧바로 만들

4) 한시준, 앞의 논문, 337~342쪽에는 대한민국의 공식 ‘정부문서’에서 “대한민국 30년 8월 5일”, <관보> 제1호는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작성되어 있음을 예증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명의의 문서에도 ‘대한민국’이란 연호를 쓰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를 쓰고 있다.

어진 것으로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했고, 그 작성경위에 대한 기록도 극히 소략하다. 가장 신뢰도를 부여할 수 밖에 없는 공식문서인 『大韓民國臨時議政院紀事錄』第一回集에는 작성경위 및 작성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四. 本院名稱의 決定

四月十日 開會 關頭에 本會의 名稱을 臨時議政院이라 稱하기로 趙蘇(素) 昂의 動議와 申錫雨의 再請으로 可決되니라. [...]

#### 八. 國號 官制 國務員에 關한 決議와 人選

四月十一日에 國號·官制·國務員에 關한 問題를 討議하자는 玄楯의 動議와 趙蘇(素)昂의 再請이 可決되야 討議에 入할새 先히 國號를 大韓民國이라 稱하자는 申錫雨의 動議와 李漢根의 再請이 可決되니라.

#### 十一. 臨時憲章의 議決

四月十一日에 臨時憲章을 起草討議할새 審査委員으로 申翼熙 李光洙 趙素昂 三人을 薦하고 審査案을 三十分 以內로 報告케 하자는 玄楯의 動議와 申錫雨의 再請이 可決되야 三十分後에 審査報告가 有한 後에 左와 如한 改正이 有하니라.<sup>5)</sup>

이 기사록에 따르면, 임시의정원 회의는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에 시작하여 11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었다.<sup>6)</sup> 29인의 대표적 독립운동가들이 상해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에 모여 밤새워 국가건설과 국가의 모습을 정하고, 정부의 책임자까지 정한 것이다.

위에도 나오듯이, 4월 11일 의정원회의에서 기초안을 작성할 심사위원으로 신익희, 이광수, 조소앙 3인이 선정되었다. 3인은 심사안을 30분 이내로 작성 보고할 책임을 맡았다. 그들은 30분 후에 위원들 앞에서 심사보고를 했고, 이어 그 초안에 대한 개정토의가 있었다. 10개 조항 중에 2개 조항에 일부 수정을 거쳤다. 그리고 당일 임시헌장을 전부 통과하기로 하였다.

임시헌장의 조문화작업은, 위의 『기사록』 대로라면, 심사위원들이 즉석에서 추천되어 단 30분만에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했을까? 4월 11일 회의 이전에 이미 임시헌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당일 30분 이내에

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임정편 II)**(국사편찬위원회, 1968), 386~389쪽.

6) “大韓民國 元年 四月十日 下午 十時에 開會하야 四月十一日 上午 十時에 閉會하니라.” (위 자료, 386쪽)

보고케 하자는 동의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실질적 초안작성자에 대하여는 강조점에 따라 몇가지 견해가 나와 있다. ①조소앙과 이시영 두 법률전문가가 ‘手草’하였던 것 같다는 견해,<sup>7)</sup> ②조소앙의 작품이라는 견해,<sup>8)</sup> ③조소앙 작품이란 주장이 일응 타당하지만, 신익희가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견해.<sup>9)</sup> 모두 조소앙이 주역을 한 점은 인정하면서, 이시영과 신익희가 어떤 관여를 했는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나는 ②의 조소앙 작품설을 지지한다. 4월 11일 새벽에 선임된 심사위원 중에 특히 조소앙은 이미 자신의 완비된 초안을 갖고 임했다고 생각된다. 그 증거는 여러 증언 및 회의정황을 통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4월 10일과 11일자 회의과정에서 조소앙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는 이미 임시헌장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완전한 윤곽을 갖고 발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본 회의의 명칭에 대해 곧바로 ‘임시의정원’이라는 명칭을 동의하여, 가결을 끌어내고 있음도 그러하고, 국호·관제 쪽으로 토의방향을 이끌어가는 것도 그러하다.

둘째, 신우철 교수의 연구는 조소앙이 작성했음을 풍부한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조소앙전의 기록, 여운형조서의 심문기록을 확인하고, 조소앙이 기초했음이 틀림없는 대한독립선언서(1919.2, 무오독립선언서라고도 함)의 내용과 흡사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sup>10)</sup>는 것이다.<sup>11)</sup>

셋째, 임시헌장의 내용을 보면 독창성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뛰어난 법률지식과 비교법적 지식이 없이 짧은 시일 내에 결코 작성될 수 없는 것이다. 조소앙은 명치대학 법학부를 졸업(1909~1912)하였고,<sup>12)</sup> 1919년 이후에도 임시정부에서 헌

7)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혜안, 2001), 120쪽. 다만 그는 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8) 조소앙 자신의 회고록, 여운형 조서의 심문기록 등에 의거. 신우철, **비교헌법사—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법문사, 2008), 292~293쪽에 소개하고 있음. 또한 강덕상, **여운형평전 I**(역사비평사, 2007), 219쪽에서 “초안을 준비한 중심인물은 조소앙이었다”는 견해가 있다.

9) 신우철, 앞의 책, 293쪽에서 상당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10) 대한독립선언서(1919.2)에서 <임시헌장>과 같은 정신 내지 구절을 찾아본다면 다음을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軍國專制를 刹除하여 民族平等을 全球에 普施할지니 此는 我獨立의 第一義요. … 同權同富로 一坊同胞에 施하여 男女貧富를 齊하며 …” ([http://db.history.go.kr/url.jsp?ID=ha\\_g\\_003\\_1620](http://db.history.go.kr/url.jsp?ID=ha_g_003_1620) 참조).

11) 신우철, 앞의 책(2008), 292~293쪽.

12) 이현희, 앞의 책(2001), 469쪽.

법문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sup>13)</sup>

넷째, 그는 일찍부터 헌법 내지 헌장에 대한 관심과 함께 내용의 구상을 하고 있었다. 예컨대 신채호, 박은식 등 저명한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1917년 “해외 각지에 현존한 단체”를 규합통일하기 위한 강령을 제시하여 폭넓은 반향을 얻은 <대동단결선언>을 작성하여 국내외 각계 인사들에게 발송했다. 이 선언문에 이미 주권재민의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데다, “해외각지에 현존한 단체의 대소은현을 막론하고 규합통일하여 유일무이의 최고기관을 조직할 것”이라고 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유일무이의 최고기관이 ‘정부’ 형태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임시정부의 구상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이다. 1919년 4월 10일 당일 그는 ‘대독립당’을 먼저 조직하자는 여운형의 제의에 대하여, 조소앙은 임시정부 조직론을 주장하여 관철시키고 있다.<sup>14)</sup> 또한 <대동단결선언>의 강령 중에 특히 “大憲을 제정하여 민정에 합한 法治를 실행할 것”을 포함시키고 있음이 주목된다. 헌법 혹은 헌장을 제정하는 것을 이미 필수요소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大憲—헌법 내지 헌장—의 내용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가고 있었음을 추지할 수 있다. 그는 임시정부 조직의 필요성, 임시정부의 형태, 그리고 大憲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 확고한 구상을 갖고 1919년 4월 10일 밤을 맞았을 것이다.

다섯째, 임시헌장의 내용에는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이란 말도 있고, 임시헌장과 함께 선포된 <임시헌장선포문>에는 “神人一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sup>15)</sup> 이는 조소앙의 종교관에 가장 잘 어울린다.<sup>16)</sup> 신익희나 이광수가 관여했

13) 조소앙의 학생시절을 정리한 한 논문은 명치대학 법학부 과정 이수 of 경험의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그는 법학이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학문이라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필요한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국망 이후에도 학업을 계속하여 (명치)대학 법학부 본과를 졸업하였다. 이 때 학습한 법학 지식은 그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시 헌법 기초위원으로서 임정의 법체계를 확립하는데, 그리고 1940년대 건국을 준비하기 위해 임정 건국강령을 기초하는데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학이라는 학문은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이다. 따라서 그가 원하는 원하지 않든 간에 대학 4년동안의 법학교육에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는 훈련을 한 셈이었다.” (김기승, “조소앙의 사상적 변천과정 ... 청년기 수학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3~4호 합집(고려사학회, 1998), 202쪽)

14) 신용하, “조소앙의 사회사상과 삼균주의”, **한국학보**, 제104호(2001), 12~13쪽.

15) “神人一致로 中外協應하여 漢城에 起義한지 三十有日에 平和的 獨立을 三百餘州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로 我子孫黎民에 世傳키 爲하야 臨時議政院의 決議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국사편

더라면 이러한 표현은 쉽게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소앙이 장기부재한 상태에서 신익희의 전적인 주도로 만들어진 <임시헌법>에서, 임시헌장 중 당시의 중군헌법초안과 달랐던 내용들이 거의 삭제되어 버리는 것을 통해, 임시헌장이 조소앙의 작품이라 대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틀(framework)을 잡고, 조문의 체계와 내용을 창출한 분은 조소앙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다년간의 법률적 지식도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애국적 민족운동의 기류를 일관한 바탕 위에, 그러한 민족운동에 법적 표현을 주조해낸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조소앙은 임정 후기의 문서, 가령 <대한민국 임시약헌>(1940.10.9), <대한민국 건국대강>(1941.11.28) 등의 작성자이다. 현재에 이르도록 한국헌법의 원형을 몇 십년간 만들고 다져나간 실질적 기초자는 조소앙이라 할 수 있다.

### III.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 (1)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함

『大韓民國臨時議政院紀事錄』第一回集에 따르면, 4월 11일 임시헌장 논의에 앞서, 4월 10일 국호에 관한 안이 가결되었다. 동 기사록은 국호의 결정과정을 간단히 적고 있다. 다시 한번 인용한다.

#### 八. 國號 官制 國務員에 關한 決議와 人選

四月十一日에 國號 官制·國務員에 關한 問題를 討議하자는 玄楯의 動議와 趙蘇(素)昂의 再請이 可決되야 討議에 入할새 先히 國號를 大韓民國이라 稱하자는 申錫雨의 動議와 李洪根의 再請이 可決되니라.

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임정편 II)**, 1968, 1쪽).

- 16) 조소앙은 1915년 六聖敎라는 종교를 제창하였다. 단군의 독립사상, 석가의 대비증생, 공자의 충서일관, 소크라테스의 지덕합치, 예수의 애인여기, 마호메트의 신행필용을 연결시켜 6명의 성인사상을 한 가지로 일체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국내외 동포의 대동단결과 민족의 종교적 단합을 목적으로 한 사상이다(이현희, 앞의 책(2001), 470쪽 참조). “신인일치”나 “신의 의사로 건국”이란 말은 단군신앙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지극히 조소앙적 표현이다.



국호를 둘러싼 논쟁이 간단할 리 없건만,<sup>17)</sup> 위 기사록은 “신석우의 동의와 이영근의 제창”으로 가결된 것 같이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명칭은 결코 하루밤 사이에 쉽게 되었을 리 없다. 우선 1919년 4월 10일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국호에 대한 여러 생각이 여러 문자로 표출되었다. ‘신한민국’, ‘한양정부’, ‘대한민국’, ‘조선공화국’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분류해보자면 앞머리에 ‘대한’이나 ‘조선’이나 하는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붙일 국체의 특성에 따라 ‘제국’, ‘민국’, ‘공화국’, 아니면 아무 것도 붙이지 않는 방법 등을 생각될 수 있었을 것이다.

4월 11일 새벽에 공식 제기된 명칭은 대한민국이었고, 조선공화국·고려공화국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sup>18)</sup> ‘대한’이나 ‘조선’이나의 논쟁은 하루밤 사이의 논쟁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910년 국치 이후 나라의 명칭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었다.

조소앙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명명론자”<sup>19)</sup>라고 하고 있다. 그의 회고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니와, 그가 기초한 “대한독립선언서”에서 “대한민주”가 등장하는 점, “민주공화제”라는 용어의 창시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그의 주장에 타당한 무게를 실어줄 수 있다.<sup>20)</sup>

당일 논쟁에서 ‘대한’의 용어를 쓰는데 반대한 이는 여운형이다. 여운형의 논

17) 예컨대 제헌의회에서도 국호를 둘러싸고 논쟁이 거듭거듭 이루어지고 있음도 한 참조가 될 것이다.

18) 여운홍, **몽양 여운형**(청하각, 1967), 40쪽.

19) **소앙선생문집(하)**, 157쪽(“자전”), 신우철, 앞의 책(2008), 293쪽에서 재인용.

20) 조소앙이 기초한 <대한독립선언서>(소위 무오독립선언서)는 “我 大韓동포 남매와 ... 우방동포여, 我 大韓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我等의 평등복리를 자손여민에 世世相傳키 위하여 자에 異族專制의 虐壓을 해탈하고 大韓民主의 자립을 선언하노라.”라고 하여, 大韓을 쓰고 있으며, 大韓民主란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조소앙 자신이 선호한 것은 ‘조선공화국’이 아니라 大韓이 아닌가 한다.

한편 윤대원, 앞의 책(2006), 36~37쪽에는 “조소앙이 기초한 가헌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조소앙의 원안이 <조선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다. 윤대원의 근거는 일본총영사가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서의 기초이며, 이 보고서에 나오는 가헌법이 조소앙이 기초한 헌법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그러나 총영사의 보고는 “假政府가 정한 가헌법”을 입수하여 번역한 것인데, 총영사가 입수한 원본은 가헌법의 “영문”이다. 따라서 영문을 일역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신조어를 택하지는 못했을 것이며, 그래서 <조선공화국>이라 번역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총영사의 보고서는 정확한 용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쓸 수 있는 문건이 아니다. 심지어 이 총영사의 문건에는 조소앙이 기초했다는 등의 언급이 없음에도, 윤대원이 임의적으로 ‘조소앙이 기초한 가헌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이 가헌법의 문헌출처는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II**(原書房, 1977), 35쪽.

지는, “大韓은 이미 우리가 쓰고 있던 국호로서 그 대한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일본에게 합병되어버린 대한의 국호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부른다는 것은 감정 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망한 나라의 복벽적 광복이 아니라 신한민국을 건설하고자 “신한청년단”을 만든 청년의 기개로, 그는 망한 나라를 이어 받고 거기다 구황실을 우대(제8조)까지 하자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주장한 사람들은 “일본에게 빼앗긴 국호이니 일본으로부터 다시 찾아 독립했다는 의의를 살려야 하고, 또 중국이 혁명 후에 새롭고 혁신적인 뜻으로 『민국』을 쓰고 있으니 이를 따라 대한민국이라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sup>21)</sup>

1919년의 시점에서 “대한”이란 명칭은 이미 국민들의 정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간 상태라 할 수 있다. “조선” 혹은 “고려”란 명칭을 부인할 이유도 굳이 없지만, “대한”이란 명칭이 곧 “잠깐 있다가 망한 나라”의 명칭으로 절대 거부되어야 할 것으로 느껴질 이유도 별반 없었다고 할 수 있음직하다. “대한의 혼”을 강조하고,<sup>22)</sup> “대한국민”을 표방했으며,<sup>23)</sup> “대한의 독립”을 주창하는 일련의 흐름<sup>24)</sup> 속에 “대한”은 뿌리깊히 박혀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 “대한”의 다음에 “민국”이 붙은 것은, 물론 전제국가가 아니라 주권재민의 민국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기서 “민국”이란 명칭은 ‘중화민국’이란 국호와 닮아있다. 중국이 중화‘민국’을 쓰고 있는 것이 하나의 참조사례가 되었던 것이다.<sup>25)</sup>

이러한 논란을 거쳐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처음으로 등장한 이래, 이 국호는 임시정부의 명칭으로 정착되었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헌법제정과정에서 ‘조선’이란 명칭과 ‘대한민국’ 혹은 ‘한국’이란 명칭이 역시 고민되었다. 예컨대 유진오의 일련의 헌법초안에서도 명칭의 변화가 일어난다. 유진오의 첫 초안에는 ‘조선’ 혹은 ‘조선민주공화국’을 쓰고 있다가, 행정연구위원

21) 여운홍, 앞의 책(1967), 41쪽.

22) 가령 1910년대 상해지역에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신규식은 그의 『한국혼』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들의 대한이 망했을 지라도 우리들 사람마다의 마음 속에는 스스로 하나의 대한이 있는 것이니, 우리들의 마음은 곧 대한의 혼인 것이다.” 신규식, **한국혼**(서문당, 1977), 15쪽.

23) 가령 안중근은 빈번히 “대한국민”을 표방했다.

24) 가령 여운형이 주된 역할을 했던 신한청년당(1918.11 창립)의 강령 중 첫째가 “대한독립을 기도함”이다. 김희곤, **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단체연구**(지식산업사, 1995), 84쪽.

25) 여운홍, 앞의 책(1967), 41쪽.

회와 공동안을 작성하면서 ‘한국’으로 이행한다. 권승렬 초안(1948년)에서는 ‘대한민국’을 쓰고 있다. 결국 국호에 대한 최종결정은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대한민국’(17표)이 ‘고려공화국’(7표), ‘조선공화국’(2표), ‘한국’(1표)로 하여, 대한민국이 국호로 결정되었다. 이 헌법기초위원회에서의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약간씩 논란되었지만, 결국은 표결없이 통과되었다.<sup>26)</sup> 이렇게 ‘대한민국’이란 명칭이 다른 명칭을 누르고 압도적으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기미년에 2천만 민족의 피로 물들여 명명한 국호”이고, “이 국호로써 세계 만방에 독립을 선포”<sup>27)</sup>한 것인데다, “3·1운동 이후로 30여 년간이나 승계하여 왔고,” “현금 국내에서 각 방면으로 사용”해온 “입에 익고 귀에 익은 국호”이기 때문이다.<sup>28)</sup> 즉 대한민국은 독립과 건국으로 이어지는 상징의 중심축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한민국의 공식 명칭화는 바로 1920년 4월 10일 밤중에 모인 29명의 독립운동가들의 결정으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이다.

## (2) 전제왕조국가로부터 민주국가로의 혁명적 전환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인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를 국체로 한다는 것이다. 제헌헌법으로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법 제1조는 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었다. 이 조항은 1948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19년 4월 11일로 소급된다. 바뀐 것은 어미(語尾) 뿐이다. “~로 함”이 “~이다”로 바뀐 것<sup>29)</sup>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은 한결같다. 제헌헌법 제정과정에서 참으로 논란이 분분했을 헌법 제1조를 확정하는 쟁점—국호와 국체의 핵심을 표현하는 문제—이 최단시일 내에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30년간(1919~1948)의 헌정사의 경험 속에서 콘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6) 이 내용은 김수용, **건국과 헌법—헌법논의를 통해본 대한민국건국사**(경인문화사, 2008), 211, 233, 239, 273, 307쪽들을 참고하여 압축정리한 것임.

27) 국회도서관, **헌법제정회의록(제헌의회)**(1967), 281쪽. 인용은 송봉해 의원의 발언에서 발췌.

28) 국회도서관, 위의 책, 281쪽. 인용구는 장병만 의원의 발언에서 발췌.

29) ‘~함’을 ‘~이다’로 바뀐 것은 유진오의 헌법초안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김수용, 앞의 책(2008), 223쪽.

## 역대 헌법 제1조30)

역대 헌법문서	반포연월일	제1조 내용
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4.1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大韓民國 臨時憲法	1919.9.11	제1조 大韓民國은 大韓人民으로 組織함 제2조 大韓民國의 主權은 大韓人民 全體에 在함
대한민국 임시헌법	1925.4.7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임
대한민국 임시약헌	1927.3.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권은 인민에게 있다.
대한민국 임시약헌	1940.10.9	대한민국의 국권은 국민에게 있되, 광복완성 전에는 광복운동자 전체에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1944.4.2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민주의원안	194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
조선임시약헌	1947.9.2	조선은 민주공화정체임
유진오안	1948.5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
권승렬안	1948.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헌헌법	1948.7.17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① 기미년 운동의 법적 성격 및 임시헌장과의 관련성

임시헌장 제1조를 이전의 다른 법문서와 비교해보자. 대한제국의 국가체제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대한국국제>이다. 1899년 8월 17일 반포된 대한국국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第1條 大韓國은 世界萬國의 公認되온 바 自主獨立하온 帝國이나라.

第2條 大韓帝國의 政治는 由前則 500年 傳來하시고 由後則 亘萬世不變하오  
실 專制政治이나라.

第3條 大韓國 大皇帝계옵서는 無限하온 君權을 享有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立政體이나라.

대한제국은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며, 황제가 무한한 君權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황권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한제국은 종말을 고했다. 강제합병에 의해 한반도를 통치한 대일본제국의 헌법<sup>31)</sup> 제1조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30) 정종섭, **한국헌법사문류**, 박영사, 2002 및 관련자료 참조.

31) 명치헌법으로 1891~1945년까지 통용됨.

천황이 총괄한다.”는 것이다. 주권은 군주에게 있고, 군주는 대일본제국의 헌법을 흠정하여 “신민”들에게 하사했다. 신민의 자유와 권리 역시 자연권적 권리가 아니라 군주가 하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법리를 갖게 된다.

전제왕권이 지배한 1910년 이전까지 ‘민주공화국’의 주장은 반역이었고, 따라서 표면적으로 제기될 수 없었다. 입헌군주국으로의 개혁은 독립협회운동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전제군주제의 폐기와 공화제를 목표로 내건 신민회는 이 주장을 표면화할 수 없었던 것이다.<sup>32)</sup> 그런데 망국 이후 10년만에 등장한 첫 헌법문서에서, 곧바로 전제왕권체제가 폐기되고 민주공화국이 선포된 것이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단기간 내에 가능했는가.

망국 직후에 광복운동 내지 독립운동에는 독립 이후의 체제에 대하여 두 가지 구상이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하나는 광복 이후 구체제로 돌아가는 것, 즉 폐위황제를 복위하여 대한제국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를 복벽운동이라 한다. 다른 하나는 망국과 함께 왕권(제국)체제도 붕괴한 것으로 보고, 독립은 곧 자주이자 민주의 체제를 수립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를 공화주의운동이라 할 수 있다.<sup>33)</sup> 1910년대 독립운동에서 구왕조의 대신들과 왕조세력들이 일제의 통치에 거의 의미있는 저항적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복벽주의는 점차 기세를 잃을 수 밖에 없었으며, 망국에 대한 책임을 왕조세력들이 져야 한다는 자각이 커져갔다. 더욱이 신해혁명을 통해 전제왕권의 종말을 맞았고, 1차대전의 결과 왕정체제국가가 민주체제국가에 패배한 “세계대개조의 대기운”<sup>34)</sup> 등은 민주공화국으로의 대전환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1919년 초에 이르러 민주공화국에의 물결은 거부할 수 없는 추세였던 것이다.

그러나 주권의 담당자로서의 국민의 출현이 없다면 국민주권은 공허하고 이국

32) 신용하, “1910년대 신민회의 민족독립운동”,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사회사**(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8쪽.

33) 복벽주의의 성쇠에 대하여는 박현모, “일제시대 공화주의와 복벽주의의 대립 - 3·1운동 전후의 왕정복고[復辟] 운동을 중심으로 -”, **정신문화연구**, 제106호(2007 봄호, 한국학중앙연구원), 57~76쪽 참조.

34) 기미독립선언서의 한 구절. 박은식은 1920년 저술한 그의 역저에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개조의 첫 번째 동기로 러시아에서 專制를 뒤엎고 공화주의로 변한 것, 두번째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황제를 축출하고 공화제로 고쳐 평화를 이끈 것,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제창을 지적하고 있다. 모두 전제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제국주의를 제압하고 민족의 자결, 자유와 자치를 강조하는 흐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소명출판, 2008), 155~158쪽.

적 담론일 뿐이다. 1919년 3월 1일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반포했을 때, 그들도 과연 독립선언의 효과가 어느 규모로, 누구의 주도하에, 얼마나 오래 진행될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1919년 3월의 폭풍노도가 전 한반도를 강타하고, 전국각지에서 각계각층의 인사가 그야말로 범국민적 규모로, 그것도 목숨을 내걸고 참여했을 때, 국민의 존재가 역사 한가운데에 확고히 드러났다. 1910년 이전에는 신민이었던 집단이, 1910년대에는 식민지백성이었던 집단이, 1919년 3월 이후에 자신의 주체를 역사의 전면에 드러낸 것이다. 모든 독립선언서에서도 국민의 존재는 뚜렷한 주권자이다. 심지어 비교적 온건한 표현을 담은 기미독립선언서에도 전제왕권에 대한 일말의 향수도 비치지 않는다. 순연히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 것이다. 더욱이 1919년 4월 초 국내에서 급박하게 만들어진 <한성정부>에는 왕조의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다.

<민주공화제>가 이의없이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3·1운동 때문이다. 1919년 3월 1일 이후 전국에 들불같이 번져간 만세시위의 물결을 타고 만들어진 임시정부였기에, 국민의 목숨을 건 독립만세의 참여가 없었다면 결코 만들어질 수 없었던 정부였기에, 국민주권의 선언은 실로 당연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1919년 3월과 4월의 한반도를 휩쓴 폭풍노도는 무엇으로 명명되어야 합당한 것이냐. 일제는 이를 “조선의 소요”, “만세소요사건” 등으로 명명했다. 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헌에는 자주 삼일혁명 혹은 삼일대혁명운동<sup>35)</sup> 등 ‘혁명’으로 일컫는 것이 자주 등장한다.

한 가지 의미있게 살펴볼 대목은 해방 이후의 헌법작성과정에서이다. 헌법전문이 실린 초안들에는, 그 짧은 전문 속에, 한결같이 “3·1운동”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조선인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하여 기미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sup>36)</sup>

우리가 헌법 벽두에 전문에 더 써 넣 것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기미년三一革命에 쫓겨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35) **대한독립운동과 임시정부 투쟁사**(서울 계림사, 1946.3.31.).

36) 유진오·행정연구회의 공동헌법초안(소위 공동안), 1948, 김수용, 앞의 책(2008), 252쪽 참조.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 이렇게 넣었으면 해서 여기 건의하는 것입니다.<sup>37)</sup>

제헌의원들은 이 1919년의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데는 이의가 없었다. 이 사건은 다른 독립운동사건이나 다른 사건에 비견될 수 없는 차원을 갖고 있음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임을 자각했고, 그러한 국민적 자각이 (전제왕조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수립(혹은 건립)했음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명명을 둘러싸고, 제헌헌법 제정기의 그 짧은 시간에 여러 표현이 대두되었다. “기미년三一혁명”(유진오 초안, 공동위원회안), 기미년 3월혁명(윤치영 외 10명 의원의 수정안) 등이 큰 흐름을 형성했고, 혁명이라는 표현보다는 항쟁(조국현), 독립운동(이승만의 수정의견), 광복(윤치영) 등이 속기록 속에 발견된다.<sup>38)</sup>

이러한 논의를 거쳐 마지막 채택된 것은 “기미三一運動”이었다. “혁명”이란 말이 사라지고, “운동”으로 대체되었다.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이어져 국가의 공식 용어는 “3·1운동”으로 정착되었고, 대부분의 문헌들은 “3·1운동”의 표현을 따르고 있다.

3·1운동 90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다시 반문해본다. 1919년의 사건은 우리 민족에게서 하나의 “운동”이었는지, 아니면 “혁명”이었는지. 독립을 위한 운동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1926년의 “6·10만세운동”이나 1929년의 “광주학생운동”과 같이 일련의 독립운동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 점에서 “3·1대운동”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1919년 3월과 4월에 집약된 만세운동은 “3·1혁명”으로 부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라 판단한다.

첫째, 1919년의 만세운동을 통해 한민족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존재를 “국민”으로 드러내었다. 일제의 지배를 벗어나 독립하자는 것 뿐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둘째, 만세운동의 성과를 법적으로 압축한 것이 바로 임시헌장이었다. 임시헌장에서 민주공화제로 한 것은, 이 만세운동이 민족해방이자 국민주권으로 압축된

37) 이승만, 1948.7.1 제헌의회에서의 발언, 국회도서관, **헌법제정회의록(제헌의회)**, 1967, 341쪽.

38) 김수용, 앞의 책(2008), 306쪽.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41년 <대한민국 건국대강>은 이 점을 아주 뚜렷히 표현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獨立宣言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發因이며 신천지의 開闢이니 …(중략)… 이는 우리 민족이 3·1憲典을 발동한 元氣이며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臨時議政院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만들어 반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自力으로써 異族專制를 전복하고 5천년 君主政治의 구각을 파괴하고 새로운 民主制度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일보의 착수이었다. 우리는 대중의 꺾방울로 창조한 신국가 형식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sup>39)</sup>

이 건국대강에서 표현한 대로, 1919년의 임시헌장 총10조에는 다음이 뚜렷하다.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독립국이 된다는 것 ▲군주정치에 허울을 파괴하고 민주제도를 건립한다는 것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을 없애고 일절 평등하다는 것 ▲인민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며, 평등한 의무를 진다는 것 ▲인민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체(임시의정원)가 통치한다는 것. 이러한 내용은 구체제를 타파하고 대혁명을 법적 문서화한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과 질적 차이가 없다. 이로써 적어도 한국인의 의식적 ‘표현’ 속에서 식민지체제, 왕조체제, 신분체제 모두가 붕괴되었다. 다른 “운동”의 수준과 질적 차이를 달리하여, 하나의 “혁명”의 도래라고 하기에 족한 것이다.<sup>40)</sup>

둘째, 거대한 혁명은 대체로 유혈과 희생을 동반한다. 과거의 통치체제와의 질적 단절이 어떤 유혈도 희생도 없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은 실제 역사에서는 몽상에 불과하다. 특히 왕정으로부터 민주정으로의 이행은 그러하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는 시민의 피를 먹고 자라며 시민의 칼로 지켜진다.”(마치니). 영국의 명예혁명을 무혈혁명이라 하나, 그것은 1689년의 단기시점에만 타당할 뿐이다. 17세기 영국은 혁명과 반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으며, 찰스 1세를 비롯한 수많은

3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임정편 II)**, 1968, 30쪽.

40) 다음을 아울러 참조. “그네들(독립운동가: 필자주)의 공동 분투한 총 결과는 己未年 3월 1일에 와서 비로소 현저한 성격을 내외에 표창하였으니, 즉 4천년 조국의 光榮있는 독립을 선포함과 2천만 민족의 숙원이었던 자유와 평등을 세계에 선포하여 대한민국의 건립과 임시정부의 조직으로써 한국 민족의 위대한 민족성을 국제적으로 선양하였다.”(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1940.2.1 (大韓民國 22年 2月 1日)) 즉 기미년운동은 국가의 독립과 인민이 자유·평등이라는 두 개의 지향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국왕측 세력들이 죽임을 당했고, 혁명세력들도 수많은 죽음을 당했다. 1919년 3월과 4월에 걸쳐, 일제의 폭압과 학살을 무릅쓰고 대한독립만세에 참여한 국민들은 각계각층을 망라했고, 그럼으로써 모두가 평등한 주권자로서의 지분을 갖게 된 셈이었다. 참여인원이 200여 만, 학살당한 인원이 적어도 7,500여 인, 투옥된 사람들이 5만에 가까운 수에 이른다.<sup>41)</sup> 이렇게 거족적인 항쟁과 희생을 통해, 한 국민들은 이족통치와 전제왕권에 대한 결별을 동시에 선언한 것이다. 임시정부의 선서문은 “전국민의 위임/신임을 받아 조직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근거짓고 있다.

존경하고 열애하는 아 이천만 同胞國民이여

民國元年 三月一日 我大韓民族이 獨立을 宣言함으로브터 男과 女와 老와 少와 모든 階級과 모든 宗派를 勿論하고 一致코 團結하야 東洋의 獨逸인 日本의 非人道的 暴行下에 極히 公明하게 極히 忍辱하게 我民族의 獨立과 自由를 渴望하는 實思와 正義와 人道를 愛好하는 國民性을 表現하리라 今에 世界의 同情이 翕然히 我國民에게 集中하였도다 此時를 當하야 本政府—全國民의 委任을 受하야 組織되었느니 本政府—全國民으로 더부러 專心코 戮力하야 臨時憲法과 國際道德의 命하는 바를 遵守하야 國土光復과 邦基礎固의 大使命을 果하기를 玆에 宣言하노라.<sup>42)</sup>

뒤이어 완비된 모양의 임시헌법(1919.9.11)이 제정되었을 때, 그 전문은 나라는 “독립국”이고, 인민은 “자유민”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sup>43)</sup> 대한민국의 인민은 민주독립국을 만들어냈음을 재삼재사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은 3·1혁명의 주체인 전국민의 위임 혹은 민의를 체화한 것이다.

셋째, 기미년의 운동이 “혁명”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문헌에서 쓰여지고 있으며, 특히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측에서 그러하다. 그 중에서 몇가지만 소개해 본다.

41) 박은식이 집계한 종합적 통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집회회수 1,542회, 집회인수 2,023,098인, 사망자수 7,509인, 부상자수 15,961인, 투옥자수 46,948인, 소실교회수 47개, 소실학교수 2대, 소실민가수 515가. 박은식, 앞의 책(1920/2008), 198쪽. 실제의 수는 박은식이 집계가능했던 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4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임정편 II)**(1968), 2쪽.

43) 我大韓人民은 我國이 獨立國임과 我民族이 自由民임을 宣言하였도다. ... 大韓民國의 人民을 代表한 臨時議政院은 民意를 体하여 元年 四月 十一日에 發布한 十介條의 臨時憲章을 基本삼아 本 臨時憲法을 制定 ...

<대한민국 건국강령, 1941년><sup>44)</sup>

제1장 총강 五.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發軔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 이는 우리 민족의 三一血戰을 발동한 원기이며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만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十條를 창조발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써 이족전제를 전복하고 오천년 군주정치의 구각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1보의 착수이었다.

<조소앙의 견해, 1945년><sup>45)</sup>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우리의 운동이 혁명운동이나 독립운동이나 하는 그 정의에 대한 물론이 많아서 어떤 때 그네들의 공동 분투한 총 결과는 己未年 3월 1일에 와서 비로소 현저한 성격을 내외에 표창하였으니 즉 4천년 조국의 光榮있는 독립을 선포함과 2천만 민족의 숙원이었던 자유와 평등을 세계에 선포하여 대한민국의 건립과 임시정부의 조직으로써 한국 민족의 위대한 민족성을 국제적으로 선양하였다. ... 정치, 경제, 문화, 교통 등 일체의 존재를 파괴하고 새 것을 수립하기 위하여 동지들이 한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 혁명의 행동이며 甲申政變, 東學亂, 己未運動 등은 전부 혁명운동이었으며 이 운동은 주제를 관철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不絶히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 임시정부의 운동도 이러하였다.”

<이승만, 김구의 견해, 1946년><sup>46)</sup>

이승만: 3월 1일은 우리 한국역사뿐 아니라 세계역사에 빛난 날입니다. 27년전 오늘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의 처음되는 非暴力革命이라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 구: 世界革命運動史上에 찬연히 빛나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國慶日 ...

기미년의 3·1혁명의 역사적 의미는 앞에서 밝힌 대로이다. 3·1혁명은 <임시

---

44)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조소앙 편(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316쪽. 大韓民國 二十三年 十一月 二十八日.

45) 임시정부 외교부장 趙素昂은 12일 오후 2시 출입기자단과 정례회견을 하고 다음과 같이 혁명운동에 대한 개념을 말하고 결론으로 통일단결을 주장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임정 조소앙, 혁명운동의 개념과 통일단결에 관해 기자회견”, **자유신문**, 1945.12.14.

46) 3·1절 기념식사 중에서. 기미독립기념회와 3·1기념회가 3·1절 기념식을 각각 거행 (**동아일보**, 1946. 3. 2).

헌장>을 만들어냈고, 이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의 헌법문서의 시발을 이룬다. 이 임시헌장 이후 완비된 형태의 <임시헌법>(1919.9.11)도 그 기본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1948년의 제헌헌법의 전문도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1987년 헌법은 임시정부의 독립의지가 아니라 ‘법통’을 계승한다고 함으로써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법통’의 연원상의 기점은 1919년 4월 11일의 <임시헌장>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음에 3·1혁명의 헌법적 의미를 음미해보자. 제헌헌법의 헌법 전문에서 “己未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했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미 삼일운동의 성격을 법적으로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헌법적으로 본다면, 기미 삼일운동 즉 3·1혁명(운동)을 통해 군주가 아닌 <인민>이 헌법제정권력으로 출현했다. 그 인민의 헌법제정권력성을 법인(法認)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다. 원래는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직접 표출해야 했지만, 식민지 하에서 그것은 애초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3·1혁명을 통해 드러난 국민적 의사를 ‘위임’ 혹은 ‘민의를 체화’의 형태로 실현한 것이 <임시헌장>이다. 그리고 임시헌장에 대한 일련의 개정작업은 모두 이 임시헌장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 (3) 민주공화제

‘민주공화제’란 말의 표현과 함의도 궁극한 대목이다. 민주공화제의 뜻은 헌법학자들이 평생을 두고 천착해야 할 과제이기에, 그 깊은 뜻은 헌법학자들에게 맡긴다. 참고로, 임시정부의 헌법문서들을 중국의 헌법문서와의 연관성을 치밀하게 밝혀낸 신우철의 연구에서는, 이 ‘민주공화제’라는 규정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요컨대 임시헌장 제1조의 민주공화제 규정은 일본 뿐 아니라 중국의 수많은 헌법문서 가운데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형식과 내용으로서, 우리 현행헌법 제1조에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고 결론지어도 무방할 것 같다.<sup>47)</sup>

47) 신우철, 앞의 책(2008), 300쪽. 신우철은 중국에서 ‘민주공화국’이란 명칭이 1925년 중화민국헌법초안 제1조에 처음 등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통상 민주제, 공화제, 혹은 민주정, 공화정 등의 표현은 쉽게 볼 수 있지만, 당시까지 민주공화제라는 결합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조소앙의 독창적인 작품이다.

조소앙에 따르면, 민주공화제는 국민의 이익을 기초로 하여 정치적 권리를 민주적으로 균등화하고 국민을 균등하게 정치에 참여시키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한다. 조소앙은, 광복 후에는 어떤 계급이 정권을 專攬하지 못하도록 하고, 광복한 정권을 국민 전체에 돌려 균등하게 향유케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민주공화의 국가체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8)</sup> 민주공화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일체 평등(임시헌장 제3조), 인민은 모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유함(임시헌장 제5조)과 같은 조항이 당연히 따르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서 민주주의 개념은 쉽게 들어오는데(예컨대 링컨의 명구 등), 이 임시헌장에서 의도했던 “공화제”는 특히 무엇을 염두에 두었을까. <균등> 내지 <평등>이 그 핵심요소인 것으로 생각된다. 인민은 일체 평등하다.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고, 의무를 지며, 정부구성에 참여한다. 이는 임시헌장과 동시에 선포한 임시정부의 <정강>의 제일이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이라고 한데서도 뚜렷하다.<sup>49)</sup> 두번째, (이 점은 그간의 연구에서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고양이다. 생명형, 신체형, 공창제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전폐되어야 할 것이다. 존엄한 인민은 권리, 의무, 참정에 있어 모두 평등한 것이며, 그럼으로써 전체로써 함께 대동화합(共和)하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조소앙은 이를 곧 삼균주의로 체계화하지만, 삼균주의의 기본구상은 이미 1910년대의 그의 각종 글들에서 정립되었음을 본다. 삼균주의의 영향력은 임시정부의 헌법문서 전체를 관통하며, 1948년 제헌헌법에서도 밑바탕의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헌헌법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

48) 이상의 요약은 인용하, “조소앙의 사회사상과 삼균주의”, **한국학보**, 제104호(2001), 26 쪽에 따름.

49) 政綱은 다음과 같다.

- 一. 民族平等 國家平等 及 人類平等의 大義를 宣傳함
- 二. 外國人의 生命財産을 保護함
- 三. 一切 政治犯人을 特赦함
- 四. 外國에 對한 權利義務는 民國政府와 締結하는 條約에 一依함
- 五. 絶對獨立을 誓圖함
- 六. 臨時政府의 法命을 違越하는 者は 敵으로 認함

상을 기하고 …”의 문구에서 보듯이 균등의 이념은 자유의 이념보다 더 중핵적인 것이었다.<sup>50)</sup> 민주공화제의 함의는 대체로 이러했던 것이다.

#### IV. 임시헌장의 선진성 및 독창성

임시헌장은 그 이전은 물론, 그 이후의 헌법문서와 비교해 봐도, 매우 혁신적이고 선진적이었고, 또한 독창적이었다. “군주제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간존중 사상에 바탕을 둔 혁신적 헌장”이었고, “입법과정 그 자체에는 새로운 조선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의가 있었다.”<sup>51)</sup>

여기서는 임시헌장 전체를 분석, 비평하고자 하지 않는다. 대신 균등 내지 평등에 관련된 조항만 뽑아서 임시헌장의 특징을 밝히고, 곧 이어 <임시헌법>에서 수정·삭제된 과정과 비교함으로써, 임시헌장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 (1)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특히 강조

제3조는 평등권에 관한 조항이다.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無하고 일절 평등임”이라고 한다. 여러 차별을 배태하는 인자 중에서 ‘남녀’를 가장 앞세우고 있다. 이렇게 차별사유로서 ‘남녀귀천 급 빈부’는 조소앙의 작품임을 직접 알게 해주며, “평등권에 관한 고유하고 선진적인 조항”<sup>52)</sup>이라 할 수 있다.

제5조는 부녀나 여성이란 말을 등장시키고 있지는 않으나, 대한민국의 인민은 누구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함으로써 여성을 포함한 모든 인민의 보

50) 우리 헌법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민주공화주의의 요소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서희경·박명립,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이념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1호(2007) 참조. 그들은 또한 조소앙이 초안한 각종 헌법문서에서 헌법상 인민의 권리는 ‘자유’보다 ‘균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또한 헌법 제84조(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삼는다. 各人의 經濟上自由는 이 限界內에서 保障된다.)를 적시하면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가하면서, 공화주의 중심교의를 확인하게 된다고 한다.

51) 강덕상, 앞의 책(2007), 219쪽.

52) 신우철 교수의 지적대로, 이러한 열거는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의 ‘남녀빈부를 齊하며’와 직접 연결된다. 신우철, 앞의 책(2008), 302쪽.

통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조소앙은, 국민의 정치적 균등을 실현하는 제도로 보통선거제를 강조한다. 보통선거제는 계급·성별·교과·빈부 차별없이 1인 1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국가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제도를 말한다.<sup>53)</sup> 보통선거권은 민주공화제(제1조)의 구체화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인민이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함”(제3조)의 구체적 실현이기도 하다.

정치에 있어 계급, 성별의 구분을 폐지하고 있음은 당시 시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1919년 현재 보통선거권이 제도화된 국가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보편적 선거가 가능하게 되었던 1948년의 5·10 총선거에서, 처음부터 2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에게 1인 1표의 보통선거가 가능했던 것은, 미군정의 제도화에 기인한 바도 있겠지만, 우리 역시 1919년의 <임시헌장> 이후 1941년의 <대한민국 건국강령><sup>54)</sup>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헌법적으로 보통선거권이 법정화된 유산의 축적 때문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면은 제9조 중에 “공창제를 전폐함”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조소앙이 장기부채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9.11)에서 이 부분이 삭제된 것을 보면, 이 조항은 조소앙의 독자적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창제는 1916년 일제가 경무총감부령 제4호 유곽업창기취체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한반도에 법제화된 것이다. 공창제는 여성을 모욕하고 비인간적인 삶을 살게 하는 대표적 문제로 인식되어, 근우회(1927~1931)를 비롯한 일제하 여성운동 단체들은 공창제 폐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왔다. 해방 이후 북한의 경우는 일제의 모든 법령을 폐기함에 의거하여 공창제는 무효화되었고, 남한의 경우에는 군정법령 제70호(부녀자의 매매 또는 가계약의 금지)에서 시발하여, 1947년 11월 14일 군정청법률 제7호 <공창제도 폐지령>으로 공창제도 및 일제의 매춘행위가

53) 조소앙, “한국독립당지근상”, **문집 상권**, 108쪽; 이는 인용하, “조소앙의 사회사상과 삼균주의”, **한국학보**, 제104호(2001), 26쪽에서 재인용한 것임.

54) 예컨대 임시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헌법문서인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해당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통선거에는 만18세 이상의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 신양·교육·거주연수·사회출신·재산상황과 과거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23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며, 모개인의 평등과 비밀과 직접으로 함.”(정확한 인용 찾을 것). 건국강령을 위한 조소앙의 초안에는 여성의 권리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생활상 남자와 평등권리가 있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조소앙 편(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306쪽.)

금지되었다.<sup>55)</sup> 그런데 1919년의 시점에는 공창제의 문제점이 심각히 여론화되기도 않았으며, 이를 문제삼은 여성운동도 대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헌장> 10개조의 하나에 포함된 것이다. 이는 임시정부 요원들의 일치된 남녀평등주의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기초자 조소앙의 균등에 입각한 인권의식의 발로라 할 것이다.

## (2) 최초의 사형폐지론의 등장, 그리고 태형의 폐지

제9조는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진폐” 즉 완전히 폐지한다는 조항이다. 여기서 생명형은 두말할 것 없이 사형을 말하며, 신체형은 당시의 식민지법 집행의 상황에서 태형을 의미함은 분명하다. <임시헌장>을 번역한 일제의 비밀문건에서, “사형, 태형, 공창 금지의 조항을 부가하고 있음”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서도 분명하다.<sup>56)</sup>

한국역사의 공식문건에서 사형폐지가 등장한 것은 임시헌장이 처음이다. 필자는 사형폐지론자로서, 한국에서 사형폐지론의 연원을 틈틈이 살펴왔다. 사형폐지론의 쟁점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폐지론을 제기한 첫 논설로 보이는 것은 1930년 송진우의 사형폐지론이다.<sup>57)</sup> 그것이 게재된 <삼천리> 잡지에는 “김병로씨 사형폐지론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략합니다.”고 부기되어 있다. 적어도 1930년의 시점에서는 송진우, 김병로가 사형폐지론의 입장을 견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19년의 시점에서 사형폐지론을 주창하고, 그것을 첫 헌법문서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매우 놀랍다. 사형폐지론에 이른 조소앙의 지적 배경 및 동 주창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그가 남긴 글 속에서 찾을 수 없어 궁금함만 남을 뿐이다. 짐작컨대, 1919년에 이르도록 사형의 남용, 특히 항쟁한 의병들과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일제의 무자비한 사형선고와 집행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짐작할 뿐이다. 아래 <임시헌법> 제정과정에서 보듯이, 조소앙이 부채한 상태에서 사형폐지론이 입법화될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을 보면, 사형폐지론은 조

55) 이상 공창제에 대한 전반적 서술은 문경란, **미군정기 한국여성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논문(1988), 92~93, 115~118쪽을 요약한 것임.

5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上海假政府(1), 문서제목 [臨時政府 憲法內容에 관한 건], 문서번호 제213호 6869(陪), 발송자 有吉明(上海總領事);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10), 문서제목 [國內暴動狀況과 臨時政府 臨時憲法], 電報 83, 발송자 兒島惣次郎(조선총독부 경무총장), 1919.5.11 참조.

57) 송진우 “사형폐지론-인도상과 형사정책상으로-”, **삼천리**, 제6호(1930.5.1), 42~43쪽.

소양의 선견적 논지에서 비롯됨은 거의 분명하다 할 것이다.

신체형의 전폐도 마찬가지다. 일단 1919년 이전의 신체형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갑오개혁 이전에 주형은 笞·杖·徒·流·死의 5형이었다. 그 5형 중笞는 50대까지, 杖은 60~100대까지였고, 기본형으로 가장 널리 쓰여졌다. 1894년에 이르러 장형은 일부 죄목에 대하여 폐지되었다가 1896년 완전 폐지되었다. 장형의 도수는 징역형으로 환산되었다. 보다 경미한 신체형에 해당하는 태형은 존속되었다. 1905년 대한제국 형법대전에도 형벌의 종류의 하나로 태형은 부녀자에 대한 간통죄 등에 제한적으로 존속시켰다. 이 형법대전은 한일 합병 이후 <조선형사령>이 시행되면서 대개 폐기되고 일본 형법이 ‘의용’되게 되었다.

일본형법에는 태형이 없으므로 그 일본형법을 ‘의용’할 때 태형은 당연히 없어질 형벌이었지만, 일제는 舊慣尊重의 명분으로 <조선태형령>(1912, 제령 제13호)을 별도로 제정 실시하였다.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고,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자” 중에서도 미납 시 혹은 일정한 정상이 있을 때 태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여, 태형의 적용범위는 매우 확대되었다. 실제로 일제는 태형이 조선국정에 맞고 범죄의 예방·진압에 유효적절하며, 단기자유형 혹은 소액 벌금형에 비해 효과가 크고, 집행방법도 간편하다고 강변했다.<sup>58)</sup> 실제로 태형은 1910년대에 가장 널리 쓰인 형벌이었고, 그 집행도 혹독했다.<sup>59)</sup> 특히 3·1운동 전야에 이르면, 태형의 빈도는 모든 형벌집행 건수 중 60% 이상에 달할 지경이 되었다. 기미년 만세시위를 한 조선인들에 대해 태형은 가장 널리 쓰인 형벌이기도 했다.<sup>60)</sup>

58) 남기정 역, **일제의 한국사법부 침략실화**(육법사, 1978), 184쪽. 이 책은 <조선사법협회잡지> 제19권 제10·11호/제20권 제3호에 실린 일제 행정당국자들의 회고담을 번역한 것이다.

59) 태형에 대한 전반적 언급은 한인섭,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한울아카데미, 1998), 21~35쪽에서 발췌정리한 것임. 태형에 관한 연구로는 김용덕, “3·1운동 이전의 태형”,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133~150; 염복규, “1910년대 일제의 태형제도 시행과 운용”,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제53호, 2004, 187~219쪽.

60) “笞九十度は 가장 輕刑”, **독립신문** 1919.9.23. “內地倭警이 所謂 保安法違反이라 하여 獨立示威運動에 參加한 農民 기타에게 과하는 最輕의 刑은 笞九十度인데 그간 六個月間에 笞刑에 처한 자 전국을 통하여 수만명에 달하다 同氏의 故郷地方에서는 笞를 맞고 出獄한 農民은 대개 臀部가 化膿糜爛하여 其 慘狀을 不忍見이오 더욱 暑氣와 治療의 不及으로 인하여 死亡하는 자 半數에 過하는지라.”고 보도하고 있다.



형벌 집행 인원 (1911-1921)<sup>61)</sup>

연도	사형	자유형	태형	합계
1911	91	8580	2406	11077
1912	70	9074	4314	13458
1913	53	10562	6213	16828
1914	53	10972	7170	18195
1915	51	11725	8997	20773
1916	53	12299	13320	25672
1917	39	12828	17770	30637
1918	47	12164	18104	30315
1919	11	14666	14718	29395
1920	37	13059	2899	15995
1921	45	14517	1	14563

이러한 태형은 일제약정의 표상이었을 뿐 아니라, 반문명적인 형벌이기도 했다. 소위 문명국가에서는 태형을 비롯한 신체형을 전폐하였던 것이다. 또한 태형은 일본형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본(내지)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조선인에 한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억압적·차별적 형벌이었다.<sup>62)</sup> 조선인의 인권을 중대하게 유린한 태형의 폐해를 체감한 독립운동가들은 태형의 전폐론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실제로 일제는 “만세시위” 내지 “조선소요사태”를 겪은 후, 소위 민심수습책의 일환으로 1920년에 폐지하였다. 식민지하 한국인의 부정적 체험이 누적된 결과로서, 체형의 전폐가 법률상으로 달성된 셈이다. 일제의 폐지에 앞서 그 폐지의 헌법적 명문화를 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구황실을 우대함

제8조는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대한 4월 11일 새벽의 논의경과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적혀 있다.

61)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22년도, 207~208쪽.

62) 조선태형령 제13조는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第八條에 舊皇室優待條件에 對하야는 一生이라는 期間을 削除하기로 趙琬九의 動議와 趙素昂의 再請으로 可決되니라.

구황실 우대조항은 넣되, 그 조건으로 ‘일생’(아마도 황실인물의 당대)동안만 우대한다는 원안에 대하여 조완구가 그 일생이라는 기간조건을 삭제하기로 동의하여, 조소앙의 재청으로 가결되었다는 것이다.

구황실 우대조항을 둘 것인가, 둔다면 어떤 조건하에서 둘 것인가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였다. 참석의원 중의 1인이었던 여운홍의 회고에 따르면,

이씨왕가의 대우 문제에 있어서도 이를 우대해야 한다는 측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측으로 나뉘었다. 조완구를 비롯한 비교적 연로한 측이 황실우대파였고, 형님(여운형)을 위시한 청장년 측이 그 반대파였다. 우대파가 주장하는 주요 이유란 “이왕가는 5백년동안이나 조선을 통치해왔기 때문에 뿌리가 깊을뿐더러 나라를 팔아먹은 것은 이완용 등의 이른바 5적과 7적의 소행이지 고종은 헤에그에 밀사를 파견하는 등 그가 할 수 있는 데 까지는 한국독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고종이 서거하자 헤아릴 수 없는 군중이 덕수궁 앞에 주저앉아 밤낮없이 통곡했던 일로 미루어서 다수 국민이 이왕가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추모정신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황실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 버티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이조 5백년의 치적을 돌이켜 보건대 공보다는 죄가 많으며, 더욱기 합병초칙문에 「국을 거하고 민을 솔하여 완전 차 영원토록 일본 명치 천황에게 봉헌한다」는 말을 쓴 것은 아무리 위협과 압력에 의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국가와 백성에 대하여 범한 죄책은 면치 못할 것이며 또 한일합병 후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은 것도 대부분 황실의 근친자인 전주 이씨들이며, 돈과 작위를 받고 매국의 덕으로 잘들 살고 있으니 그들은 장차 국민들 앞에서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 또 고종이 서거했을 때 대한문 앞에서 국민들이 통곡을 한 것은 고종의 죽음이 슬퍼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풀길 없이 맺히고 맺혔던 망국의 한이 국장이란 기회에 터져나왔던 것이었다”고 역설했다.<sup>63)</sup>

여운홍의 회고는, 일부 세부에서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이 쟁점을 둘러싼 우대파와 반대파의 기본논지를 잘 전달하고 있다고 본다.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 고종 및 황실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 고종의 국장 때 군중의 통곡은 어떤 의미

63) 여운홍, 앞의 책(1967), 41~42쪽.

로 해석되어야 할까 하는 것이다. 연로자층과 청장년층의 주장이 선명히 대립되는 것도 특징적이다. 비유하자면 프랑스혁명 때 시종 구체제의 루이 16세의 운명을 놓고 온건파와 강경파의 의견대립과 일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다. 논란 끝에 제8조와 같이 규정되자, 반대파를 대표하는 여운형이 임시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것도 이해되는 대목이다. 한편 조소앙은 이 조항에 ‘재청’하였다고 하는데, 평소 황실옹호론을 지지했다기 보다는(그의 평생의 논지는 민주공화파였다) 통합을 중시하는 그의 평소 논지에서 독립의 대의를 지지하는 세력은 (황실우대파라 할지라도) 포용하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론해본다. 어떻게 보면, 민주공화제의 임시헌장을 만들었지만, 이 조항은 왕정으로부터 공화정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한 처리방식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V.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9.11)에서의 일부 후퇴경향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1919년 9월 11일 발표됨으로써 대체되었다. 8월 28일 임시헌법초안이 의정원에 제출되었는데, 그 서문에는 “원년 4월 11일 발표의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초”함을 밝히고 있다. 임시헌장도 하나의 헌법이지만, 이 임시헌장은 또한 “입국의 강령을 보임에 불과하니, 이는 헌법의 제정을 예상한 것이 분명”한 고로, 임시헌법의 제정을 당연시하고 있다. 임시헌법은 그 명의를 개정이라 하더라도 “기실은 10개조의 부연”이라고 하고 있다.<sup>64)</sup> 임시헌법초안의 체계는 “第一章 강령 第二章 인민의 권리와 의무 第三章 대통령 第四章 의정원 第五章 국무원 第六章 법원 第七章 재정 第八章 보칙 共 八章 五七十條로 成하다. 大統領만 議政院에서 선거하고 國務總理以下의 各國務員은 대통령이 任命케 되다 主權의 行使를 대통령에게 위임함이 현행 臨時議政院法과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sup>65)</sup>

임시헌법 초안은 일련의 독회를 거쳐 9월 6일 통과,<sup>66)</sup> 9월 11일 공포되었다.<sup>67)</sup> “元年 사월십일일에 발표한 십개조의 臨時憲章을 기본삼아 본 臨時憲法을 制定”

64) “정부개정안에 대하여”, 독립신문, 제4호(1919.9.2).

65) “臨時憲法草案의 內容”, 독립신문, 제4호(1919.9.2).

66) “臨時憲法 通過”, 독립신문(1919.9.9).

67) “改正公布된 新憲法”, 독립신문(1919.9.16).

했음이 거듭 확인된다. 하지만 임시헌장의 10개조의 조항과 직접 관련된 임시헌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임시헌장의 고유하고도 선진적인 조항들이 미묘하게 수정 또는 삭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법문언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실제 기초자의 교체에 기인한 바가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즉 <임시헌장>의 기초자인 조소앙은 이미 독창적인 사상에 입각하여 독창적인 법문 구성에의 자신감을 갖고 임했던 반면, <임시헌법>의 기초자인 신익희는 당시의 중국의 헌법문서들을 발췌선택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방대한 헌법을 만들어낸 것이다. 신우철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는 중국헌법문서들을 “혼성모방”한 “변안헌법”을 만들어냈다.<sup>68)</sup>

그렇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조소앙의 장기부재가 결정적이었다. 조소앙은 1919년 6월부터 임시정부의 외교특파원으로써, 프랑스 파리의 만국평화회의, 스위스의 국제사회당대회에 참여하는 등 한국의 독립승인 및 국제연맹에의 가입 등에 분방하였다. 그는 런던 파리 등 6, 7개국에서 외교활동에 전력하다가 1921년 5월 북경을 거쳐 1922년 1월 상해로 돌아왔다.<sup>69)</sup> 임시헌법이 제정되는 전 과정에 그는 상해에 부재한 상태였고, 따라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 아마도 임시헌법이 제정된다는 사실 자체도 알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그가 상해에 체류하고 있었다면, 그의 법률가적 역량으로 보나, 임시헌장의 제정자로서의 위치로 보나, 이후 헌법문서에의 참여밀도로 보나, 신익희의 수정·삭제안과 다른 내용을 초안단계에서 만들어냈을 것이다.

임시헌법의 제정기록들을 보면, 신익희의 활약이 단연 두드러진다. 그는 당시 임시정부의 법무차관이었던 데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법학강의의 경험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중국헌법의 질·양에 압도되어서인지, 그는 중국헌법 초안들을 거의 수용하는 편이었다. 의정원 기록들을 보나, 그의 지위(법무차관)로 보나, 조소앙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는 임시헌법의 초안을 <정부위원>의 자격으로 만들었고, 의정원 회의에서도 <답변>을 도맡아놓고 하고 있다. 구체적 조문화는 대개 신익희의 의도대로 귀결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임시헌장>의 주요 조항들이 수정, 삭제되어 버렸다. 조소앙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임시헌장>의 선진적 내용들은, 조소앙의 부재 속에서, 신익희의 주도적 준비와 진행에 의해, 수정과 삭제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결과 <임시헌법>은 조문의 체계와 분량의 면에서는 거

68) 신우철, 앞의 책(2008), 308~309쪽.

69) 이현희, 앞의 책(2001), 472쪽.

의 완비된 근대헌법전에 속하지만, 그 내용은 임시헌장보다 오히려 후퇴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임시헌장>의 선진성 부분에서 다루었던 조항들이, 임시헌법에서 어떻게, 어떤 연유로, 수정·삭제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남녀평등 및 공창제 관련

임시헌장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절 평등함”이라고 되어 있다. <임시헌법> 초안은 단지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절 평등함”으로 수정하고 있다. 여운형은 왜 삭제하였는가고 질문하고 있으며, 장봉은 ‘남녀’를 다시 삽입하자고 한다. 그에 대해 정부위원들은 ‘남녀귀천빈부’보다 ‘계급 기타 종류의 차별’이 더 심각할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맞다(신익희)고 하는데, ‘남녀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속하므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삽입론과 삭제론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행간에 엿볼 수 있다. 삭제론은 ‘남녀’ 차별이 당연히 차별임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열거조로 강조하는 데 대해서 유보적이다. 남녀차별의 적극적 시정에 관심을 가진 적극론자(조소앙, 여운형, 장봉)는 소극론자의 세에 밀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시헌장>에서의 ‘공창제 전폐’ 조항 또한 <임시헌법>의 초안에서 삭제되어 있다. 삭제론의 첫 번째 논거는 “헌법조목에 가입하기는 뭔가 불편하다.”(신익희)<sup>70)</sup>는 것을 처음 내세우기도 하고, “헌법에 명시함은 고래로 우리나라에 공창이 大熾하였다고 표시하는 듯”(안창호)하다는 일종의 헌법조문상의 부적합성을 내세웠다. 그러다 거듭 추궁에 맞서, 실질적 삭제사유를 낸다. 즉 “공창제는 폐하고 보면 사창의 폐해가 유할 듯”하여 삭제한다는 것이다. 공창제의 기능적 필요성을 약하게나마 주장하는 셈이다. 여운형, 장봉 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창제 전폐’ 문구의 존치는 실패했다. ‘남녀평등’과 ‘공창제’의 헌법적 표기 여부에서 적극적 평등론자(여운형, 장봉)에 대하여, 삭제론자(신익희, 안창호) 등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삭제론자가 차별론자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되, 적어도 적극적 차별철폐론의 입장에서 서 있지 않음은 분명한 것이다. 아마 조소앙이 재석하고 있었다면 초안작성단계에서부터 다른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기에, 조소앙의 부재가 아쉬운 대목이다.

70) 신익희의 헌법관은 중국헌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진다. 당시의 중국헌법문서들은 ‘인민은 일절 평등’이라고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우철, 앞의 책(2008), 311쪽.

## (2) 제9조(생명형, 신체형 … 을 전폐함)를 삭제한 이유

<임시헌법> 초안에는 앞서 말했듯이 <임시헌장> 제9조 전체가 삭제되어 있다. 생명형 및 신체형의 전폐조항도 삭제된 것이다. 형식적 사유는 ‘사실상 헌법조목에 가입함이 불편하다(신익희)이다. 거기다 신익희는 생명형의 경우 그 필요성을 적극 주장한다(이는 <임시헌장>과 상반된다.). 즉 “생명형에 관하여는 우리 정부에 불가불 필요하겠나故”라고 한다. 우리역사에서 처음 법문화되었던 사형폐지론은 조소앙의 부재상황에서 5개월만에 삭제되고 만 것이다.

신체형의 삭제이유는 다소 다른 논거에서 출발한다. 헌법적합성의 형식적 사유에 더하여, 신체형이 “현금 각국에 문명하다는 나라에는 이미 폐지되고” 자못 국가라고 하기 어려운 몇몇 민족에게 잔존해있는 것이기에, “신체형 폐지라는 것을 헌법에 明書하는 것이 羞恥인故”로 삭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신익희는 <임시헌장>에 “신체형 전폐”가 포함된 이유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신익희가 <임시헌장>의 기초에 관여했다는 그의 주장, 그리고 임시헌장에 그가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론<sup>71)</sup>을 지지하기 주저하게 된다. 첫째, 신익희는 조소앙이 신념을 갖고 펼친 적극적 남녀차별철폐론에 가담하고 있지도 않으며, 생명형 폐지론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고, 신체형 폐지론의 입법화의 필요성과 그 배경논거에 대해서도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만일 그가 <임시헌장>의 기초에 관여했다라면, 자신의 주장을 적극 개진했을 것이고 그 흔적은 4월의 <임시헌장>에 남든지, 9월의 <임시헌법>에서처럼 전부 삭제론이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세우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4월의 <임시헌장>의 독창적 선진화의 부분(조소앙의 작품)은, 그에 거의 관여하지 못했던 신익희에 의해 9월의 <임시헌법>에서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구황실 우대

<임시헌장>에서 논란된 채 제정되었던 구황실우대조항은 <임시헌법> 초안에는 삭제된 채 임시의정원에 상정되었다. <임시헌장>에서 구황실우대조항의 주창자였던 조완구가 왜 삭제했는지를 질문했다. 그에 대해 신익희는 “구황실우대에 대하여는 달리 조례를 정하겠다”고 답한다. 즉 헌법이 아니라 하위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으로, 구황실우대의 비중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조완구는

71) 신우철, 앞의 책(2008), 293쪽.

“구황실우대조건을 삽입하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그 필요성으로 “민족통일의 방침”이 될 것이고, 이 조항을 삭제하면 “인민이 반항을 살까 두렵다”는 것, 그리고 “전 황실이 적에게 주권을 피탈당한 것”이라 하였다.

그에 대해 이미 4월 <임시헌장> 제정시에 반대 의견을 폈던 여운형은 같은 논리로 반론을 폈다. 서로간에 논전이 오간 후 표결에 붙인 결과 8대 6으로 구황실우대 조항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그러나 그 쟁점에 대해 결코 승복할 수 없었던 폐지파들은 다음 회의에 다시 삭제동의안을 냈다(김태연). 안창호 역시 “余도 (삭제에) 贊成이라 優待의 必要가 無하나니 皇室도 自給自足함이 可할지니라 將來에 必要하면 달니 對策을 講할 수도 있나니라.”고 하면서 폐지론 쪽에 섰다. 그러나 결국 동 조항은 유지되었다. 요컨대 조완구 등의 우대조항 존치론이 여운형, 김태연, 안창호 (아마도 신익희) 등의 폐지론에 가까스로 앞선 상태로 이 조항은 살아남았다.

다만 이 조항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았다. 1925년의 <대한민국 임시헌법> 1927년의 <대한민국 임시약헌> 등 이후의 모든 헌법문서에는, 구황실우대조항은 아무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1925년의 단계에 오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의식이 일반화되면서, 그 조항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일소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919년의 구황실우대조항은 과도기적 삽화이자, 구황실의 마지막 그림자, 그리고 고종황제의 국상이 3·1운동의 발화의 계기시점과 일치했다는 점이 낯긴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 VI. 맺음말

이 글은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역사적·법적 의미를 다루었다.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발점을 기록하는 역사적 문서이다. 1948년 제헌헌법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고, 1948년에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이상, 헌법사적으로 1991년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을 건립한 헌법장전으로서 거대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였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을 규정했다. 이후 수많은 헌법의 명멸에도 불구하고, 모든 헌법전의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있는 바, 그 헌법 제1조는 실로 대한민

국 임시헌장의 제1조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의 뜻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전제군주가 지배하는 왕조국가가 아니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국가임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전제주의로부터 민주공화국으로의 혁명적 전환이 여기서 생겨났다. 군주국으로부터 민주공화국으로의 변화는 대개 혁명의 산물이다. 그럼 어떤 혁명이 일어났던가. 역대 헌법의 전문에는 “3·1운동”이 들어 있다. 수많은 독립운동 중에서도 유독 “3·1운동”만이 언급되는 이유는, 3·1운동을 통해 민족주권의 담지자로서 국민이 자신의 모습을 역사의 전면에 우뚝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것도 혁명에 수반되는 엄청난 유혈의 희생과 함께. 그래서 일제시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문서 속에서 발견되듯이, 기미년의 만세의거는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합당하다. 3·1혁명의 주도자인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이족전제를 전복하고 군주정치의 구각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한 것이다. 이는 헌법제정권력으로서의 국민의 출현에 해당한다. 상해의 애국자들은 이를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라고 헌법적 표현을 해낸 것이다.

임시헌장의 실질적 작성자는 조소앙이다. 그는 오랫동안 헌법제정을 주장해왔고, 헌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준비해오다가, 그 시점에서 초안을 제출한 것이다. 공식문서에서 헌법의 심사위원으로 조소앙, 신익희, 이광수를 지명했지만, 조문의 내용과 구성, 문구의 선택에 있어 조소앙의 영향이 압도적이었다. 그로 인해, 임시헌장의 창조적이고 선진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의 인권 옹호와 차별철폐, 사형 및 태형의 폐지 등이 그러했다.

임시헌장에서의 보다 창조적이고 선진적이었던 부분은,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제정시에 상당부분 삭제되었다. 창조성의 부분은 중국헌법문서의 혼성이식에 의해, 선진성의 부분은 보다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견해에 의해 위축되었다. 그러한 변화는 신익희에 기인한 바 크다. 조소앙의 장기부재 상태에서, 신익희는 이 <임시헌법>의 내용을 주도했던 것이다. 구황실우대조항은 두 헌법문서에 공히 등재되어 있는데, 이는 과도기적 한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1919년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국민주권을 선언한 대한민국의 최초의 헌법문서로서, 그 내용의 선진성과 함께, 다른 헌법문서와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 유일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의 탄생, 민주공화제, 인민의 일절 평등 등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 참고문헌

- 강덕상, **여운형평전 I**, 역사비평사, 2007.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임정편 II)**, 1968.
- 국학진흥연구소사업추진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조소앙 편(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국회도서관, **헌법제정회의록(제헌의회)**, 1967.
- 김용덕, “3·1운동 이전의 태형”,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133~150.
- 김기승, “조소앙의 사상적 변천과정-청년기 수학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3~4호 합집, 고려사학회, 1998.3, 167~202쪽.
- 김수용, **건국과 헌법-헌법논의를 통해본 대한민국건국사**, 경인문화사, 2008.
- 김정명 편, **朝鮮獨立運動 II**, 原書房, 1977.
- 김하경 편, **대한독립운동과 임시정부 투쟁사**, 서울 계림사, 1946.
- 김희곤, **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단체연구**, 지식산업사, 1995.
- 남기정 역, **일제의 한국사범부 침략실화**, 육법사, 1978.
- 문경란, **미군정기 한국여성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논문, 1988.
-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출판, 2008.
- 박현모, “일제시대 공화주의와 복벽주의의 대립 - 3·1운동 전후의 왕정복고 [復辟] 운동을 중심으로 -”,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106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3, 57~76쪽.
- 삼균학회 편, **소앙선생문집 (상), (하)**, 햇불사, 1979.
- 서희경·박명림,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이념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106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3, 77~111쪽.
- 송진우, “사형폐지론-인도상과 형사정책상으로-”, **삼천리**, 제6호, 한빛, 1930. 5, 42~43쪽.
- 신규식, **한국훈**, 서문당, 1977.
- 신용하, “조소앙의 사회사상과 삼균주의”, **한국학보**, 제27권 제3호(통권 제104호)(2001 가을호), 일지사, 2~42쪽.
- 신용하,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사회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신우철, **비교헌법사-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법문사, 2008.
- 여운홍, **몽양 여운형**, 청하각, 1967.

- 염복규, “1910년대 일제의 태형제도 시행과 운용”,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53호, 2004, 187~219쪽.
-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 혜안, 2001.
- 정중섭, **한국헌법사문류**, 박영사, 2002.
-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22년도.
- 한시준, “대한민국 ‘건국60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제7집, 백범학술원, 2009.
- 한인섭,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한울아카데미, 1998.

&lt;Abstract&gt;

## The Korean Provisional Charter of the Constitution in 1919 — The Origi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

In Sup Han\*

The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ays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Although Korea’s Constitution was made in July 1948, the article 1 has its origin as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Constitution by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on 11 April 1919.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as established immediately after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The Government declared its regime as the democratic republic, mandated from the will of revolting people who declared the independence from Japanese imperialism and emancipated from the traditional royal despotism. The Provisional Charter included many advanced articles created by the genius of Cho So-Ang. Equal protection on gender, class, and status was especially stressed. The absolute abolition of death penalty, corporal punishment, and licensed prostitution was included. The core idea of the Charter was a republican government based on the human dignity and equality of equal people.

Key word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Charter of the Constitution in April 1919,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the Republic of Korea, Cho So-Ang, death penalty, corporal punishment

---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